

제 1335 호(그1)

1986.12.31

제	보도	공보	공보	공
	보	보	보	보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열 보
 편집인: 공 보 관 김 승
 전 화: 731-6111~3
 인 쇄: 서울특별시 중화발전실
 전 화: 735-3337

시 보

차 례

조 례	
제 2129 호: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조례	3
제 2130 호: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취득제한시세과세면제 에 관한조례개정조례	3
제 2131 호: 서울특별시새마을사업지원율제한시세과세면제조례개정조례	4
제 2132 호: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개정조례	4
제 2133 호: 서울특별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특별조례 개정조례	5

이면제속

일										
월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082

제 2134 호 : 서울특별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	6
제 2135 호 : 서울특별시군장성급소유자용차의과세면제에관한특별조례중 개정조례	6
제 2136 호 :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7
제 2137 호 :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7
제 2138 호 : 서울특별시수도권공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	7
제 2139 호 : 서울특별시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 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8
제 2140 호 : 서울특별시철도건설공유지분취합등기에따른등특세과세면제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8
제 2141 호 : 서울특별시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9
제 2142 호 : 서울특별시무자기관경영평가조례	9
제 2143 호 :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	11

◎ 규 칙

제 2155 호 :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시행규칙	15
--------------------------------	----

◎ 고 시

제 965 호 : 용마자연공원조성사업가산변경시행허가	17
------------------------------	----

◎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1986.12.31

서울특별시장 임브현

◎서울특별시조례제 2129 호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
물 및 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조
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중 “상이군경 의료규정 별표 1
상이군경 상이구분표중 분류번호 5, 14,
22, 23, 24, 26, 27, 29, 31, 41, 77, 79, 81,
83, 86, 89, 103 ”를 “국가유공자 복우
동이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 상이동
급 구분표 분류 번호중 5, 14,
22, 23, 24, 26, 27, 29, 31, 41, 77, 78, 79,
81, 83, 86, 89, 92, 102, 103 에”로 한다.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7년 12월 31일

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6.12.31

서울특별시장 임브현

◎서울특별시조례제 2130 호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
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국가유공자 및 그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
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분급으로 취득한 등
기하는 60 이하의 주택 및 그 부
속토지·건축물액이 대부분급을 초과
하는 경우 그초과 부분을 포함하
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를 면제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조례제정,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6.12.31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서울특별시조례제 2131 호

서울특별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
 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다”중 “주택개발사업(지원개발) 대상지역내에서”를 “주택개발사업”으로 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6.12.31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서울특별시조례제 2132 호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
 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 및 불균일 과세에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중 “85개공미터”를 각각 “60개공미터”로 하고, “집단주택”을 각각 “집단주택(다세대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조 제2의2호 및 제4의2호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주가 건축한 공동주택용 부동산

보존지구내의 토지 및 건물"로 한다.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세율) 제 2 조의 불균등과세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상세법 제 188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 (전·담·과수원·임야 및 목장 용지의 경우는 1,000분의 0.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 237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시세과세면제 조례중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1986.12.31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서울특별시조례 제 2134 호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시세과세면제 조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시세과세면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중 "일반보조금의"를 "보상금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군장성급 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1986.12.31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서울특별시조례 제 2135 호

서울특별시 군장성급 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군장성급 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6.12.31

서울특별시장 염보현(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136 호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6.12.31

서울특별시장 염보현(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137 호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수도권내공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6.12.31

서울특별시장 염보현(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138 호

서울특별시 수도권내공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수도권내공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6.12.31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서울특별시조례제 2139 호

서울특별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철도건설공유지분 분할등기에 따른 등등록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6.12.31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서울특별시조례제 2140 호

서울특별시철도건설공유지분분할등기에따른등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철도건설공유지분 분할등기에 따른 등등록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1986.12.31

서울특별시장 임보현

◎서울특별시조례제 2141 호

서울특별시태양열난방주택에 대한시
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공포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7 년
12월 31 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7 년 1 월 1 일부터 시
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투자기관경영평가 조례를 이에 공포한
다.

1986.12.31

서울특별시장 임보현

◎서울특별시조례제 2142 호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

서울특별시 투자기관 경영평가 조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
시 제 49 조 제 1 호에 따라 설립된
하여 설립된 투자기관(이하 "투자기관
지배당단(이하 "투자기관"이라 한다)
다)의 경영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을 규정하여, 투자기관의 경영합
화와 서울특별시 투자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충실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 대
상이 되는 투자기관은 그 자본금의 5
% 이상을 서울특별시에서 출자한 기
구로 한다.

제 3 조 (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 ①투
자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
의, 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
(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 운영한다.

②투자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
의의 사항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2. 경영평가위원회의 조직

3. 경영실적 평가
 4. 예산편성에 관한 공통지침의 작성
 5. 기타 투자기관 경영평가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경영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의 기획관리실장, 시정연구관, 투자관리관 및 투자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각 국장과 공기업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장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전문적, 기술적 분야에 관한 용역연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서울특별시 투자기관 경영평가단 (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 4 조 (경영목표의 설정) ①위원장은 투자기관의 다음 년도의 경영목표 설정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이를 각 투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투자기관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다음 년도의 경

영목표를 설정하여 7월 31일까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경영목표를 조정하여 그 내용을 8월 31일까지 투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조 (경영실적 보고) ①투자기관의 장은 매년 당해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20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경영실적 보고서에는 결산서, 분석서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경영실적 평가) ①위원장은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경영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②투자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방법은 위원장이 정하되 투자기관의 공익성, 경영목표의 달성도 및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투자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5월 20일까지 마치고 그 결과를 투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

을 투자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부자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필요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편성 지침) ①시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각 부서기관의 예산편성서 공3점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부자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두자기관은 제 1 항의 박살 편성지침의 하역 작성된 예산안을 10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경영평가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행일) 이 조제는 공포한 날
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경영목표설정 및 보고에 관한
절차규정) 위원장은 1987년도 투
자기관의 경영목표를 1986년 12월
31일까지 투자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고, 투자기관의 장은 1987년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서
1987년도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다음
건축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6.12.31

서울특별시작업보원고

서울특별시조례 제 2143 호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 123호 제 1항 제 1호에
개정한다.

제 8 조 단서중 "영제 102 조 제 4 항"을 "영제 102 조 제 3 항 제 2 호"로 한다.

제 12 조 제 4 항 제 1 호에 따라 다른 사람
 을 고용하여 같이 일하였다. 다른 사람도
 일지 않으면 공업지역 및 공업지역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 다른 사람도
 환경상 기타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
 고 그 공장에 대하여 다른 사람도
 활동의 주범은 다른 사람도
 는 범위에 대하여 다른 사람도
 거쳐 시정에서 활동하는 다른 사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2 조 제 5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공장으로서 주거 및 생활환경의 미관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고 그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환경에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 조 제 2 항중 “영 제 102 조 제 4 항 및 제 5 항”을 “영 제 102 조 제 2 항 및 제 3 항 제 2 호”로 한다.

제 15 조 제 2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경을 위한 식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9 조에 제 6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회화, 조각등의 미술장식은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조성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 29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9 조 (구역의 세분) 법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제 1 종 재해위험구역: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붕괴등의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극히 큰 구역
2. 제 2 종 재해위험구역: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붕괴등의 재

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비교적 큰 구역

3. 제 3 종 재해위험구역: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붕괴등의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제 29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9 조의 2 (용도제한) ① 제 1 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묘지관련 시설
2. 쓰레기소각처리장
3. 군사시설, 호소, 소규모시설에 관한 것
4. 동물관련시설
5. 공사용 가설건축물

② 제 2 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제 1 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2. 존치기간 6개월 이내의 가설건축물
3. 공중변소
4. 폐차장

5. 창고 (연면적 330 제곱미터이내의 것에 한한다.)

③ 제 3 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제 2 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2. 관망탑
3. 휴게소
4. 운동장 및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5. 야외 음악당
6. 야외극장
7. 농·식물원
8. 수족관
9. 자동차 검사장
10. 자동차 매매장

제 30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0 조 (건축물의 구조제한) ① 제 1 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
2. 철골콘크리트구조
3.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4. 철골구조
5. 기타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구조

② 제 2 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 1 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구조
2. 목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③ 제 3 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 2 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2. 조적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 제 32 조 제 1항의 소위 “조적”이란 비율단층 “상층수 30, 하층수 30” “상층수 40 이상”으로 한다.
- 제 32 조의 제 3항내지 제 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2 조 제 3항에서 “제 2항의 구조의 구성에 의한 옥외부분의 수평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로에 접한 부분에 높이 5미터이상, 폭 3미터이하의 포도주 출지아 등은 경우에는 수평면적 6제곱미터의 면적을 조정권적에 산정한다.”

④ 건물의 전면, 측면 또는 일점의 경계선 부근에서 피도상으로 식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건축물의 전면, 측면 또는 일점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면적에는 조경의 조정에 필요한 조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영 제 15 조 제 2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외곽선주변에 관목을 등기하 하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축물의 파선의 안쪽에 적당적으로 식재 조류 분기 휴게장소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옥상 조경을 하는 경우 수목을 식재하는 때에는 토심깊이를 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미리 그 부분의 단면도를 제출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폭이 15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대지와 도로사이에 대지와의 출입에 지장을 주는 턱 또는 분리대등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족이 하다고 인정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3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 15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약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사 1인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사 1급 2인이상이 조경에 착수시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비역서상의 금액으로 하되, 현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 33 조에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부수하여 설치되는 조경시설의 설계 및 감리는 조경기사(1급이상)가 하여야

한다.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의 건축물
 2. 세대수가 100세대이상인 공동주택
- 제 36 조 본문중 “영 제 103 조 제 5 항”을 “영 제 102 조 제 2 항”으로 하고 12 조 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폐율

당해지역 지구별 전폐율에 10분의 2를 가산한 비율이하로 하되 다만, 이 경우의 선축면적의 허용범위는 당해지역, 구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당해지역 지구별 전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최대건축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9 조 제 3 항중 “용적율을 주거지역 200퍼센트이하 상업지역 600퍼센트이하로 하여야 한다.”를 “용적율을 상업지역 안에서는 600퍼센트이하, 주거지역 안에서는 200퍼센트이하로 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④주거전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적율 상업지역 안에서는 1,000퍼센트이하, 주거지역 안에서는 300퍼센트이하,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500퍼센트이하로 할 수 있다.

제 47 조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7 조 (건축상) ①시장은 건축문화의 발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건축자, 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건축상은 금상, 은상 및 동상으로 구분하며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제 47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47 조의 2 (국기제양대의 설치)

제 60 조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물용 국기제양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국기제양대는 옥상전면 중앙부에 설치하되, 난간으로부터 1.5 미터 안쪽에 설치한다.
2. 하부지지구조물의 재료는 앵글 또는 환봉으로 한다.
3. 하부지지구조물의 구조는 2개 이상의 볼트너트로 국기제양대용의 설치 및 제지가 가능하도록 제작하되, 로프가 위로 빠지지 아니하며, 앵글 또는 환봉이 뒹기거나 구부러 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로 한다.

제 49 조중 “제 21 조내지 제 20 조”를 “제 13 조내지 제 20 조”로 한다.

제 50 조중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를 “기준시로부터 10 년간에 한하

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무자기관 경영평가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

1988.12.31

서울특별시청 역 보 원

서울특별시규칙제 2155 호

서울특별시무자기관경영평가조례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무자기관 경영평가 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무자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 2 조 (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① 조례 제 3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기관 경영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공기업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 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조 (위원회의 의결사항) 조례 제 3 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기타 경영평가에 관하여 규칙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방법
2.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투자기관별 상여금 지급을 조정(총 상여금의 50%이내에서 조정할수있다)
3. 위원회의⁽¹⁾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한다) 또는 위원이 투자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하여 심의 의결사항으로 부의하는 사항

제 4 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관리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투자기관의 임직원, 기타 관계인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 6 조 (서울특별시 투자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조례 제 3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서울특별시 투자기관 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수시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에 있는 대학교수
2.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있는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 회계사

4. 기타 경영평가에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경영평가단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경영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 7조 (간사) ①위원회 및 경영평가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울특별시 투자관리담당관이 된다.

제 8조 (경영평가 보고서 첨부서류) 조제

제 5조 제 2항의 규정중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 서류
2. 분기별 심사분석 서류
3. 기타 결산의 내용 및 경영실적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서류

제 9조 (경영평가 편람의 작성)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경영실적 평가방법은 경영평가 편람으로 이를 작성한다.

제 10조 (운영규칙) 이 규칙의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 및 경영평가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965 호

용마자연공원조성사업기간변경시행허가

1. 서울시 고시 제 225 호 (83.4.18) 로

공인 조성 시행허가 되었으며 서울시 고시 제 494 호 (86. 7.18) 로 사업변경 허가된 용마자연공원조성사업지구내 대하여 도시 공원법 제 6 조의 동법 제 2 조 및 도시계획법 제 26 조의 동법 시행령 제 25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기간 변경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한다.

1986. 12. 31

서울특별시 상

가. 사업실행지: 동대문구 망우동 산 69 - 1번지일대
나. 사업종류 및 명칭: 용마자연공원조성 사업기간변경 시행
다. 변경내역: 사업기간변경 시행

구 분	착 공	준 공
당초사업기간	83. 5	86.12.31
변 경	83. 5	87.12.31

라. 사업실행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동 389-2 경산신계 전철공과
출판사: 산 흥 군
다. 사업기간 및 준공년월일
착공: 1983. 5
준공연월일: 1987.12.31

사 령

◎ 1987 년 1 월 1 일 자

령 제 518 호

정 명	발 명 부 서	현 부 서	직 급
김 규 회	계 부 국	장 묘 사업 소	지방행정사무관
강 종 관	성 동 구	"	지방행정주사
최 종 순	운 수 1 과	"	"
박 갑 윤	중 구	"	지방행정주사보
조 철 조	종 로 구	"	"
이 길 표	서울시립대학	"	"
왕 병 학	시립정신병원	"	지방행정서기
윤 영 노	마 포 구	"	"
여 창 배	시립서대문병원	"	"
이 학 준	은 평 구	"	지방행정서기보
변 승 자	아 동 상 담 소	"	"
맹 혁 재	한강관리사업소	"	지방기록지원시보 (9 등급)
최 승 중	"	"	"

서울특별시장